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2 선고 2017나7926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

담당변호사 우천출

피고,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운

담당변호사 임종윤

변론 종결 2020. 1. 22

판결선 고 2020. 2. 12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5가단18295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주위적으로,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답 2,361㎡(이하'C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

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. 9. 23. 접수 제24711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인천 강화군 D 답 3,706㎡(이하 'D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. 11. 18. 접수 제29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10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11. 19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,

이 유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횡령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, C 토지와 D 토지의 증거가 부담부증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).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■타소판사 성원제판사 김지영